



365고수익기업예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365고수익기업예금

■ **상품특징** : 단 하루만 예치하더라도 고금리가 적용되며 자유로운 입출금 및 각종 이체,

결제 기능이 결합된 수시입출금식 상품이며, 사업상 필요한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거치식으로 예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1개월 미만으로 운용할 때 유리한

예금 상품

2 거래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u>실제 계약</u>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u>내용은 수령아시는 동상 또는 당서에 따듭니다.</u>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 가입금액 제한없음 | | <u>-</u> |
| 상품유형 | 기업자유예금 | | | 기존계좌 불가 전환 | | |
|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해지 : 영업점 | | | | | |
| | 1일이싱 | 여치한 예금의 매일 최종잔역 | 백에 | 대하여 금익 | 백별 차등이자 <u>율</u> 을 | 적용함 |
| | | 금액별 | | 기본이자율 | | |
| 기본이자율 | | 1천만원 미만 | | 0.01% | | |
| · _ · · - (세전, 연%)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0.01% | | |
| | | 5천만원 미상 1억원 미만 | | 0.05% | | |
| (2024.01.01현재)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0.10% | | |
|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0.20% | | |
| | | 10억원 이상 | | C | 0.30% | |
| 우대서비스 | 해당사항없 | L음 | | | | |
| 이자계산방법 (산출근거) |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 지급일)부터 이자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영업점에 게시한 금액별 이자율로 셈한다. 다만, 은행에서 따로 정하여 일정기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금한 자금을 먼저 출금하는 방식으로 예금일로부터 이자 지급일 까지의 부리 대상 금액 매일 잔액을 영업점에 게시한 금액별 이자율로 셈한다. | | | | | |

| | | 수표, 가계수표로 수입한 예금으 | · 그 타점권의 교환결제일로 한다. 경우 그 예금 수입 해당일을 | | |
|----------------|---|---|--|--|--|
| | 구 분 | 이자계산기간 | 이자지급일(원가일) | | |
| 이자지급시기 | 기업자유 예금 |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 지급일)부터 이자 지급일 전날 까지의 기간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두 번째 토요일 | | |
| |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 급할 수 있습니다. | | | | |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 | | |
| 세제혜택 | 해당사항없음 | | | | |
| 계약해지 방법 | 영업점에서 해 | 지 가능 | | | |
| 양도 및 | 양도 및 질권설정은 불가합니다. | | | | |
| 담보제공 | | | 5히 이과 등이 거래 제하 | | |
| 거래중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1)~(3) 불구하고 사고신고등록계좌, 신용카드(체크카드, 직불회원 포함) 결제 | | | | |
| | 계좌, 지로 및 자동납입 관련 대체결제계좌, 한도제한계좌 등은 거래중지계좌에서 제외될 수 있음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 | | | |
|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



휴면예금 및 출연

-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내용

해당사항없음

위법계약 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mark>거절사유와 함께 통지</mark>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예금자보호 여부

_{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유의 사항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 자동재예치, 예금담보대출이 불가능함
- 비과세종합저축가입이 불가능함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용 어 | 설명 |
|------|---|
| 압류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 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가압류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질권설정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경과기간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e-jejubank com

[365고수익기업예금]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 최고금리 | 0.30% 2024.01.01.일 현재 기업자유예금 금액별 기준 (자세한 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확인 필요) | | | |
|-------------|--|-----|--------------|-------|
| 가입기간 | 해당없음 | | | |
| 최저가입금액 | 제한없음 | | 최고가입금액 | 제한없음 |
| 수수료 우대요건 | 해당사항없음 | | | |
| 수수료우대 | x | | | |
| 예금담보대출 | x | | | |
| 예금자보호 | 0 | 원금고 | · 이자 포함 5천만원 | 까지 가능 |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문점은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금액별 차등이자율로 계산 | | | | |
|--------|-----------------------------|--|---------------------------------|--|--|
| 이자계산방식 | 구 분 | 이자계산기간 | 이자지급일(원가일) | | |
| | 기업자유 예금 |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 지급일)부터 이자 지급일 전날까지 의 기간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두 번째 토요일 | | |
| | | | | | |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